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0시 09분



# 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관광사업(여행업) 등록 신청	3

## 관광사업(여행업) 등록 신청

2021.03.02 10:14 조회수 197 등록자 서규나

✓ 민원사무명	관광사업(여행업) 등록 신청
✓ 민원내용	
✓ 관계법령	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
✓ 구비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.</li> <li>2. 사업계획서 1부. (다음 내용 포함하여 작성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회사개요, 주요사업내용</li> <li>나.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</li> <li>다.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</li> <li>라.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</li> </ul> </li> <li>3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임대일 경우 : 임대차계약서</li> <li>나. 자가일 경우 :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주택이나 아파트는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2종근린생활시설, 상가건물, 사무실용 오피스텔 가능                     </li> <li>4. 자본금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법인일 경우 :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 원본 또는 재무재표 확인서 원본</li> <li>나. 개인일 경우 :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영업용 자산명세서 원본과 그 증빙서류(예금잔액증명서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다. 국내 : 1천 5백만원 이상 / 국내외 : 3천만원 이상 / 종합 : 5천만원 이상 자본금 확인되어야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다수의 여행업 신청 시 각각의 자본금의 합계치를 충족해야함. (예 : 국내여행업, 국내외여행업 신청 시 → 4천 5백만원 이상 확인)                     </li> <li>5. 결격사유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대표자 및 임원진 기본증명서 각 1부.</li> </ul> </li> <li>6. 법인등기부 등본 1부.(법인의 경우에 한하며, 사업목적 에 해당여행업 포함)</li> <li>7. 법인인감증명서</li> <li>8. 외국인투자증명서(외국인투자법인만 해당)</li> <li>9. 신분증 제출 (대표자가 직접 올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대리인 방문 시 : 대리인 신분증 지참,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작성(인감 날인), (법인)인감증명서 첨부</li> </ul> </li> </ol>
✓ 처리부서	관광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7일

✓ 수수료 30,000

✓ 처리기간


✓ 기타사항

✓ 흐름도

✓ 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[서식 1] 관광사업 등록신청서(관광진흥법 시행규칙).hwp (962 hit/ 62.0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

다음글

건설업 등록신청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